



제 428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청소년 도박중독예방교육 연 2회 의무화 〉
■ 박정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571호)

2025. 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김용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청소년 도박중독예방교육 연 2회 의무화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박정하의원 등 16인
2. 발 의 일: 2025. 2. 28.
3. 회 부 일: 2025. 3.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마트폰 보급의 확대, 온라인 플랫폼의 다양화로 온라인 사행성 게임에 접근하기 쉬워진 가운데,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이용이 증가하며 도박 중독 및 관련 범죄로 이어지고 있음.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문제 관련 사회경제적 비용이 2조 1,739억원에 달하여 예방 및 관리가 필요함.

현행법에서는 청소년 도박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근거를 두고 있지만, 청소년의 도박중독예방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은 필요한 시책에 따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청소년 도박중독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청소년의 도박중독을 예방하고 불법 사행성 게임 접근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8조의4).

Ⅲ. 검토의견

1. 청소년 도박중독예방교육 연 2회 의무화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학교의 장이 연 2회 이상 청소년 도박중독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4제4항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8조의4(청소년 도박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 ① ~ ③ (생략) <신설>	제18조의4(청소년 도박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연 2회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도박중독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검토의견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조의4 등에 따르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는 학교 내 청소년 도박중독예방교육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 각 학교장은 학생 도박중독예방교육 시행 등을 수행하여야 함.

[학생 도박중독 등 예방교육 관련 현행 규정]

근거법	주요 내용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 <u>사감위</u> - <u>청소년 도박중독예방교육</u> 과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교육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u>시책 수립·시행</u> (법 제18조의4)
교육기본법	○ <u>국가·지자체</u> - 학생·교직원의 <u>건강·복지 증진</u> 을 위해 필요한 시책 수립·실시 (법 제27조제1항)
학교보건법	○ <u>학교장</u> -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誤用)·남용(濫用)의 예방, 성교육,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전자기기의 과의존 예방, <u>도박 중독의 예방</u> 및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u>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u> (법 제9조) - <u>연간 17차시 이상 체계적·지속적인 보건교육</u> 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사항 조치 (교육청, 「2024년 학생건강증진 분야 주요업무 추진방향」)
학교안전법	○ <u>학교장</u> - 학생·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에게 <u>안전교육</u> (교통안전, 약물 등 보건위생 관리, 사이버중독예방, 재난대비안전, 폭력예방 등) 실시 및 학기별로 교육감에게 결과 보고 (법 제8조제1항, 시행규칙 제2조제1항) - 약물·사이버중독 예방교육 연간 10차시 이상 등 학생 <u>안전교육</u> 시행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별표1] 학년별 학생 안전교육의 시간 및 횟수)

- 그런데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2024년 수행한 도박중독예방교육은 총 학생 대비 교육 이수자가 39.1%¹⁾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등 도박중독예방교육의 경우 다른 유형의 예방교육과 달리 「2024년 학생건강증진 분야 주요업무 추진방향」,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등에서 최소 교육 차시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²⁾

1) 2024년 총 학생(5,132,180명) 대비 도박중독예방교육 이수자는 2,005,533명

[참고자료1]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도박중독예방교육 사업

2) 약물·사이버중독 예방교육 등의 경우 안전 항목별 필요한 최소 교육 차시가 정해져 있음

교육 이수 현황이 미흡한 실정임.

- 이에 개정안은 학교장이 연 2회 이상 청소년 도박중독예방교육을 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 도박³⁾중독은 절도·폭력과 같은 2차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등 사후 치유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도 중요하므로, 개정안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중독예방교육이 학교 내에서 주기적으로 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청소년의 경우 도박은 그 자체로 범죄이므로 ‘도박중독 예방교육’이 아닌 ‘도박예방교육’으로 수정 필요⁴⁾, 예방교육 주기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교육시간 명시 필요⁵⁾, 교육부 지침 등을 활용⁶⁾ 등 관계 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학년별 학생 안전교육의 시간 및 횟수 >

(단위: 단위활동, 차시)

구분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
교육 시간	유치원	13	10	8	10	6	2	2
	초등학교	12	11	8	10	6	2	2
	중학교	10	10	10	10	6	3	2
	고등학교	10	10	10	10	6	3	2
횟수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3회 이상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1회 이상	학기당 1회 이상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별표1])

3) [참고자료2] 청소년 도박문제 및 치유·상담 현황, [참고자료3] 도박범죄 관련 규정

4) (문화체육관광부 수정안)

문 의 처

02)6788-5375

현 행	개 정 안	문체부 수정안
제18조의4(청소년 도박중독예방교육 과 학교교육의 연계) ① 위원회는 청소년 도박중독예방교육 과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교육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신 설>	제18조의4(청소년 도박중독예방교육 과 학교교육의 연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연 2회 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도박중독예방교육 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의4(----- 도박예방교육 -----) ① ----- 도박예방교육 ----- ----- ----- ----- ② ~ ③(현행과 같음) ④ ----- ----- ----- ----- -- 도박예방교육 ----- -----.

- 5)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교육시간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 가정통신문, 기타 교육시간 등에 포함하여 도박중독예방교육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바, ‘총 1시간 이상’ 등 구체적인 교육시간 명시 필요
- 6) (지방교육청)
- 강원도교육청: 법령에 의한 교육이 많아지면 교과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바, 기운영 중인 학생 안전교육(사이버중독, 학교폭력)과 연관하여 법령이 아닌 교육부 지침으로 연 1회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함
- 전남도교육청: 「학교보건법」에 의해 필수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도박중독예방교육 2회 실시 의무화는 부담을 가중하는 것인바, 별도 조항 추가는 불필요

[참고자료1]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도박중독예방교육 사업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도박문제 예방교육 강사

- ‘도박문제 예방강사 양성과정’ 이수자 중 ‘예방교육관리시스템’ 상 등록된 예방교육 강사가 도박문제예방교육을 수행
- 최근 10개년 도박문제예방교육 강사 양성 현황

(단위: 명)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9.
인원	28	124	124	122	143	106	-	26	55	67

* 2013~2024년 누적 예방강사 양성 인원: 853명, '24. 9월 기준 강의활동(등록) 인원: 482명

** 2021년은 코로나19로 양성과정 미운영

□ 최근 5개년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 지원 현황

- 연도별 교육 횟수 및 교육 인원 현황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교육 횟수(건)	5,105	7,309	8,680	13,244	17,298
교육 인원(명)	405,323	514,883	643,484	1,409,042	2,005,533
전체 학생 수(명)	5,346,874	5,323,075	5,275,054	5,209,029	5,132,180
전체 학생 수 대비 이수율(%)	7.6%	9.7%	12.2%	27.0%	39.1%

- 연도별·학급별 교육 지원 현황

연도	전체(a+b+c+d)		초등학생(a)		중학생(b)		고등학교(c)		학교밖* 소년(d)	
	횟수(건)	인원(명)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20	5,256	407,192	1,271	75,205	2,201	181,594	1,633	148,524	151	1,869
'21	7,557	525,749	2,787	116,487	2,941	252,714	1,581	145,682	248	10,866
'22	8,961	648,724	4,057	180,835	3,314	303,812	1,309	158,837	281	5,240
'23	13,604	1,422,300	6,715	484,552	4,577	557,616	1,952	366,874	360	13,258
'24	17,948	2,030,270	9,494	744,554	5,300	759,956	2,504	501,023	650	24,737

* 학교 밖 청소년 지도센터, 청소년 쉼터, 비인가 대안학교, 보호관찰소, 소년원 학교 등

[참고자료2] 청소년 도박문제 및 치유·상담 현황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청소년 도박문제 현황

- 청소년 도박문제 사회경제적 비용은 2조 1,739억원(직접비용 9,793억원, 간접비용 1조 1,657억원, 기회비용 289억원)으로 추계(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청소년 도박문제 관련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 연구」, 2024)
- 국가승인통계인 ‘2024년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25.2.) 결과, △1회 이상 도박 경험이 4.3%(390여만명 중 16만 7천명), △도박을 처음 경험한 나이는 평균 12.9세

□ 청소년 도박 치유·상담 지원 현황(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 청소년 도박 치유서비스 이용인원 현황

구분	치유서비스 이용인원(A) (단위: 명)							상담등록인원(B) (단위: 명)			비율 (B/A)
	초기대응(비대면)			대면서비스			합계	지역 센터	전문 상담 기관	합계	
	헬프 라인	넷민	소계	지역 센터	전문 상담 기관	소계					
2021	553	95	648	526	68	594	1,242	311	42	353	28.4%
2022	767	103	870	542	48	590	1,460	353	40	393	26.9%
2023	832	191	1,023	977	93	1,070	2,093	657	92	749	35.8%
2024	726	183	909	3,050	185	3,235	4,144	1,422	142	1,564	37.7%

* 치유서비스 이용인원(A): 헬프라인(넷라인), 지역센터, 전문상담기관에서 1회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인원

- 교급별 청소년 도박 치유서비스 이용인원 현황

구분		2021	2022	2023	2024
교급별 이용인원 (단위: 명)	초등	0	4	4	9
	중등	219	362	501	848
	고등	918	1,042	1,488	2,258
	무응답	105	52	100	1,029
계 (단위: 명)		1,242	1,460	2,093	4,144

□ 최근 5년간 연도별, 연령대별 도박범죄 현황

(단위 : 명)

연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계
20년	221	2,489	2,599	1,478	625	178	7,590
21년	120	1,819	1,839	1,019	425	142	5,364
22년	104	1,133	1,309	1,184	680	290	4,700
23년	170	1,475	1,462	1,032	845	430	5,414
24년	669	1,953	1,903	1,534	990	398	7,447

자료: 문화체육관광부(원자료: 경찰청, KICS)

[참고자료3] 도박범죄 관련 규정

※ 「경찰청범죄통계」상 ‘도박범죄’로 분류되는 범죄 기준

□ 「형법」

- 도박·상습도박·도박개장, 복표발매(중개/취득)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8조(복표의 발매 등) ①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복표발매를 중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복표를 취득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국민체육진흥법」

- 불법스포츠도박장·사이트 개설·운영, 도박행위 등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2. 유사행위를 위하여 해당 운동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자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6조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4. 제2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6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한국마사회법」

- 불법승마투표권(마권) 발행·운영, 도박행위 등

제48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마사회가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경마를 시행하는 행위

2.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전자적 방법으로 국내에서 승마투표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2. 영리 목적으로 마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대행 또는 알선하거나 마권을 양도하는 행위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위하여 마사회가 제공하는 경주의 배당률, 경주화면 및 음성,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경마정보에 관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등을 복제·개작 또는 전송하는 행위

2.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마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하거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홍보하는 행위

제49조(마권의 구매제한 등) ① 마사회는 미성년자(전자마권의 경우에는 21세 미만인 사람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마권을 발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마권을 구매·알선 또는 양수(讓受)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사회의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마사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

2. 마사회의 임직원

3. 조교사·기수·말관리사

4. 미성년자

5. 경마개최 업무에 종사하는 자

제50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8조제1항, 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위반한 자
 2.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
 3. 제49조제2항 각 호(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2호에 따른 행위의 상대가 된 자
 4. 출전할 말의 경주능력을 일시적으로 높이거나 줄이는 약물, 약제, 그 밖의 물질을 사용한 자
 5. 경마에 관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얻게 할 목적으로 경주에서 말의 전능력(全能力)을 발휘시키지 아니한 기수
 6. 제51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자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③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다.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8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併科)할 수 있다.

1. 조교사·기수 및 말관리사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자
2. 조교사·기수 및 말관리사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供與)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자
3.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공여하거나 공여할 의사를 표시한 자
4. 위계(僞計)나 위력을 사용하여 경마의 공정을 해치거나 경마 시행을 방해한 자
5. 경주로, 예시장(경주 전 출전마의 상태를 관객이 확인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말의 이동통로 등에 무단 진입하거나 이물질 등을 던져 경주 시행을 방해한 자 또는 기수·개최운영위원 등 경마운영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하여 경마 시행을 방해한 자
6. 제11조제1항에 따른 마주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소유의 말을 마주 명의로 등록하여 경주에 출전시킨 자
7. 제11조제4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8.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의 상대가 된 자
9. 제48조제3항제2호를 위반한 자
10. 제49조제2항을 위반한 자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 무허가 사행행위영업(복권발행업, 현상업, 회전판돌리기업, 추첨업, 경품업 등) 등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業)으로 한 자
2. 제1호의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에게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 또는 제7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제12조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사행기구를 설치·사용하거나 변조한 자
3.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2항 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제9조제3항(제13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3.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위반하여 제11조에 따른 영업의 방법 및 당첨금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나 영업시간 등의 제한을 지키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4. 제12조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
5. 제12조제4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입장시키거나 청소년의 참가를 허용하여 영업을 한 자
6. 제12조제5호를 위반하여 광고나 선전을 한 자
7. 제12조의2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행기구를 이용하여 영업을 한 자
8.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행기구를 판매한 자
9. 제15조제2항(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합격증명서를 훼손하거나 제거한 자
10.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11. 제16조를 위반하여 표시 없는 사행기구를 판매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한 자
12.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및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나 그 밖의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3. 제19조제2항에 따른 개수(改修)·개선 또는 시정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4. 제21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하여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자